

## 1 개요

연말정산시 소득을 누락하였거나 소득공제를 (부당)과다공제 또는 소득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과소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구분	대상	신고(청구)자	신고기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소득 과다·과소·무신고</li> <li>소득·세액공제 누락</li> <li>소득·세액공제(부당)과다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li> </ul>	다음 연도 5.1~5.30
경정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소득 과다신고</li> <li>소득·세액공제 누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li> <li>근로자</li> </ul>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수정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소득 과소신고</li> <li>소득·세액공제 (부당)과다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li> <li>근로자</li> </ul>	관할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소득 무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li> </ul>	관할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15.01.01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종전규정(경정청구기간 3년)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국기법 부칙 제12848호, 2014.12.23.).

##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 CFO's Check Point

#### ◆ 연말정산 수정신고·경정청구 관할세무서 및 가산세 적용여부

(원천-280, 2011.05.17)

임·직원이 직접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무서는 경정청구 일 등 **현재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5월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단, 근로자가 과다공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법규과 - 562, 09.12.03.).

## 3 수정신고 - 제출서류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의 과다공제 등으로 당초 세액을 적게 납부하였거나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결정·경정하기 전까지 이를 정정하여 가산세와 함께 추가납부하는 신고절차를 말한다.

구분	수정신고자	
	회사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사업장관할 세무서	주소지관할 세무서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li> <li><b>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분)</b></li> <li>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정분)</li> <li>당초분·정정분소득공제신고서</li> <li>관련 증빙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li> <li><b>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b></li> <li>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정분)</li> <li>당초분·정정분소득공제신고서</li> <li>관련 증빙서류</li> </ul>

## 3 수정신고 - 가산세

### (1)가산세 적용

연말정산시 부당 또는 과다공제로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였거나 과다환급을 받은 경우로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원천-499,2009.06.09.).

구분	가산세 적용대상 및 유형	
회사가 수정신고시	회사	• <b>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b>
	근로자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근로자가 수정신고시	근로자	• <b>납부불성실가산세</b> ※※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종업원의 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누락된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단 부당한 방법으로 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임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국세기본법 §47의4 ④).

## 3 수정신고 - 가산세

### (2)가산세 계산

회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중 작은 금액 { ①, ② }</li> <li>① 미납·과소납부세액 × 3% + 【미납·과소납부세액 × 미납일수 × (2.5/10000)】</li> <li>② 미납·과소납부세액 × 10%</li> </ul>
근로자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납·과소납부세액 × 미납일수 × (2.5/10000)</li> </ul>
	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li> </ul>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40%</li> </ul>

## 3 수정신고 - 가산세

### CFD's Check Point

- ◆ **근로소득자가 세법의 무지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여부**  
가산세는 근로소득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으로 세법의 무지·착오 등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02두10780, 2004.06.24)
- ◆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기부금부당공제를 받은 경우**  
허위의 기부금영수증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소득자에게 다음의 가산세가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한다(원천-499, 2009.06.09.).

구분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	<b>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b> 적용
근로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b>부정과소신고가산세</b> 부과·통보

## 3 수정신고 - 가산세

### (3)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가산세감면을 적용한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과세자료 해명통지(수정신고 안내 포함)을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를 포함)는 제외한다(국기법48②1, 국기령29). 개정

수정신고기한	감면비율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b>1개월 이내</b> 에 수정신고한 경우	90%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초과 <b>3개월 이내</b> 에 수정신고한 경우	75%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초과 <b>6개월 이내</b> 에 수정신고한 경우	50%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b>1년 이내</b> 에 수정신고한 경우	30%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1년 <b>6개월 이내</b> 에 수정신고한 경우	20%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 초과 <b>2년 이내</b> 에 수정신고한 경우	10%